기획예산처	보도설명자료	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배포 2026. 11. 3.(화)

농어촌특별세의 미래대응기금 전출·예탁은 미래대응기금법(안)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추진했습니다.

< 보도내용 >

□ 2026.11.3.(화) 국민일보 「농어촌에 쓸 3.8조, 미래대응기금으로… “법적 근거도 실익도 없다”」 제하의 기사에서

○ “농특회계 설치 법률에 미래대응기금으로 돈을 보낼 근거가 없다”며,

○ “특정 사업비를 단순히 옮기는 방식으로, 미래대응기금을 경유하도록 설계할 정책적 실익이 분명하지 않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< 정부입장 >

□ 정부는 **미래대응기금법(안)과 국가재정법**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미래대응기금 전출 및 예탁금을 ’27년 예산안에 반영*하였습니다.

* 총 3.8조원 (= 사업 전출 1.2조원 + 적립금 2.6조원)

○ 이는 최근 증시 호황에 따라 급증하는 **농어촌특별세**를 통해 미래대응기금 내 **농어업 사업의 추진**을 지원하고, 여유자금은 적립·운용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등 **농어업 분야 장래 소요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**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.

□ **미래대응기금법(안)**은 **다른 회계·기금이 여유자금을 미래대응기금 총괄계정에 예탁**할 수 있도록 규정*하고, 이에 대해서는 국채·공채 이자율 및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**이자를 지급**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* 미래대응기금법(안) 제10조 특별회계 또는 「국가재정법」 제5조에 따른 기금(이하 "기금등"이라 한다)의 관리주체는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미래기금 총괄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.

○ **국가재정법 제13조**도 **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**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계 및 기금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**회계·기금 간 여유재원**을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·전출하여 **통합적으로 활용**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정책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김정애 (044-214-2330) 서기관 하치승 (hcs017@korea.kr)
	농림해양예산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정성원 (044-214-2550) 사무관 박근형 (rmsgudkorea@korea.kr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